

【문 1】 위법성 조각사유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
(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겉으로는 서로 싸움을 하는 것처럼 보이더라도 실제로는 한쪽 당사자가 일방적으로 위법한 공격을 가하고 상대방은 이러한 공격으로부터 자신을 보호하고 이를 벗어나기 위한 저항수단으로서 유형력을 행사한 경우에는 그 행위가 새로운 적극적 공격이라고 평가되지 아니하는 한, 이는 사회관념상 허용될 수 있는 상당성이 있는 것으로서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② 근로자의 쟁의행위가 형법상 정당행위가 되기 위해서는, 첫째 그 주체가 단체교섭의 주체로 될 수 있는 자이어야 하고, 둘째 그 목적이 근로조건의 향상을 위한 노사간의 자치적 교섭을 조성하는 데에 있어야 하며, 셋째 사용자가 근로자의 근로조건 개선에 관한 구체적인 요구에 대하여 단체교섭을 거부하였을 때 개시하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조합원의 찬성결정 등 법령이 규정한 절차를 거쳐야 하고, 넷째 그 수단과 방법이 사용자의 재산권과 조화를 이루어야 함은 물론 폭력의 행사에 해당되지 아니하여야 한다는 여러 조건을 모두 구비하여야 할 것이고, 또한 쟁의행위에서 추구되는 목적 중 일부가 정당하지 못한 경우에는 쟁의목적의 정당성을 인정할 수 없다고 할 것이므로 정당행위가 될 수 없다.
- ③ 경찰관의 현행범 체포행위가 적법한 공무집행을 벗어나 불법하게 체포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다면, 현행범이 그 체포를 면하려고 반항하는 과정에서 경찰관에게 상해를 가한 것은 불법 체포로 인한 신체에 대한 현재의 부당한 침해에서 벗어나기 위한 행위로서 정당방위에 해당하여 위법성이 조각된다.
- ④ 불법 감청·녹음 등에 관여하지 아니한 언론기관이 그 통신 또는 대화의 내용이 불법 감청·녹음 등에 의하여 수집된 것이라는 사정을 알면서도 이를 보도하여 공개하는 행위 역시 일정한 요건을 갖춘 경우에는 형법 제20조의 정당행위로서 위법성이 조각될 수 있다.

【문 2】 절도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습으로 단순절도를 범한 범인이 상습적인 절도범행의 수단으로 주간에 주거침입을 한 경우에 주간 주거침입행위는 상습절도죄와 별개로 주거침입죄를 구성한다.
- ② 절도죄에 있어서 친족상도례에 관한 규정은 범인과 피해물건의 소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거나 범인과 피해물건의 점유자간에만 친족관계가 있는 경우에도 적용된다.
- ③ 비록 ‘주간에’ 사람의 주거 등에 침입하였다고 하더라도, ‘야간에’ 타인의 재물을 절취한 이상, 형법 제330조의 야간주거침입절도죄에 해당한다.
- ④ 어떠한 물건을 점유자의 의사에 반하여 취거하였는데, 그 행위가 결과적으로 소유자의 이익이 되거나 또는 소유자의 추정적 승낙이 있다고 볼 만한 사정이 있는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불법영득의사가 인정되지 아니한다.

【문 3】 실행의 착수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허위의 채권을 피보전권리로 삼아 가압류를 한 경우에는 그 채권에 관하여 현실적으로 청구의 의사표시를 외부적으로 표시한 것이라고 볼 수 있으므로, 본안소송을 제기하지 아니한 채 가압류를 한 것 자체만으로도 사기죄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할 것이다.
- ② 사기죄는 편취의 의사로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에 착수한 것으로 보아야 하므로, 사기도박에서도 사기적인 방법으로 도금을 편취하려고 하는 자가 상대방에게 도박에 참가할 것을 권유하는 등 기망행위를 개시한 때에 실행의 착수가 있는 것으로 보아야 하고, 그 후에 사기도박을 숨기기 위하여 정상적인 도박을 하였더라도 이는 사기죄의 실행행위에 포함된다.
- ③ 추행의 고의로 상대방의 의사에 반하는 유형력의 행사, 즉 폭행행위를 하여 실행행위에 착수하였으나 추행의 결과에 이르지 못한 때에는 강제추행미수죄가 성립하며, 이러한 법리는 폭행행위 자체가 추행행위라고 인정되는 이른바 ‘기습추행’의 경우에도 마찬가지로 적용된다.
- ④ 허위 채권에 기한 공정증서를 집행권원으로 하여 채무자의 소유권이전등기청구권에 대하여 압류신청을 한 시점에 소송사기의 실행에 착수하였다고 볼 것이다.

【문 4】 횡령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착오로 송금되어 입금된 돈을 임의로 인출하여 소비한 행위는 횡령죄에 해당하므로, 피고인이 자신의 소유 토지가 다목적댐사업의 사업구역에 편입됨으로써 한국수자원공사에 대하여 가지게 된 토지보상금채권에 관하여 피고인의 채권자가 압류 및 추심명령을 받아 그 명령이 피고인에게 송달되었는데, 그 후 한국수자원공사가 업무착오로 토지보상금을 집행공탁이 아니라 피고인을 피공탁자로 변제공탁한 것을 기화로 피고인이 이를 수령하여 보관하였다면, 위 금전은 여전히 한국수자원공사 소유이므로, 피고인이 한국수자원공사의 반환요구를 거절하였다면,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② 지입회사에 소유권이 있는 차량에 대하여 지입회사로부터 운행관리권을 위임받은 지입차주가 지입회사의 승낙 없이 보관 중인 차량을 사실상 처분한 경우 횡령죄가 성립한다.
- ③ 타인의 부동산을 보관 중인 자가 불법영득의사를 가지고 그 부동산에 근저당권설정등기를 경료함으로써 일단 횡령행위가 기수에 이르렀다면 그 후 같은 부동산에 별개의 근저당권을 설정하였다고 하더라도, 새로운 법익침해의 결과를 발생시켰다고 할 수 없으므로 불가벌적 사후행위에 해당한다.
- ④ 회사의 이사 등이 업무상의 임무에 위배하여 보관 중인 회사의 자금으로 뇌물을 공여하였다면, 이는 오로지 회사의 이익을 도모할 목적이었다고 할 것이어서 이사 등은 회사에 대하여 업무상횡령죄의 죄책을 부담하지 아니한다.

【문 5】 죄수관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감금을 하기 위한 수단으로서 행사된 단순한 협박행위는 감금죄에 흡수되어 따로 협박죄를 구성하는 것이 아니나, 불법감금의 기회에 협박이 행하여졌어도 그것이 도주를 방지하기 위한 수단으로 행해진 것이 아니고 별개의 동기·원인으로 행해진 경우에는 그 협박은 감금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 ② 피해자에 대한 폭행행위가 동일한 피해자에 대한 업무방해죄의 수단이 되었다고 하더라도 그러한 폭행행위가 이른바 ‘불가벌적 수반행위’에 해당하여 업무방해죄에 대하여 흡수관계에 있다고 볼 수는 없다.
- ③ 폭행 또는 협박으로 부녀를 강간한 경우에는 강간죄만 성립하고, 그것과 별도로 강간의 수단으로 사용된 폭행·협박이 형법상의 폭행죄나 협박죄 또는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의 죄를 구성한다고 볼 수는 없으나, 감금행위가 강간죄의 수단이 된 경우, 감금죄는 강간죄에 흡수되지 않고 별죄를 구성한다.
- ④ 甲 중친회 회장인 피고인이 위조한 중친회 규약 등을 공탁판에게 제출하는 방법으로 甲 중친회를 피공탁자로 하여 공탁된 수용보상금을 출금받은 후, 이를 보관하다가 반환을 거부하였다면, 甲 중친회를 피해자로 한 사기죄와 횡령죄가 모두 성립한다.

【문 6】 모욕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모욕죄는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를 저하시킬 만한 추상적 판단이나 경멸적 감정을 공연히 표시함으로써 성립하므로, 피해자의 외부적 명예가 현실적으로 침해되거나 구체적·현실적으로 침해될 위험이 발생하여야 하는 것도 아니다.
- ②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기본권의 주체로서 지위를 가지고 행위하는 영역과 관련하여서는 형벌의 수단을 통해 보호되는 외부적 명예의 주체가 될 수 있는 것이므로, 이러한 경우에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역시 명예훼손죄나 모욕죄의 피해자가 될 수 있는 것이다.
- ③ 이른바 집단표시에 의한 모욕은, 모욕의 내용이 집단에 속한 특정인에 대한 것이라고는 해석되기 힘들고, 집단표시에 의한 비난이 개별구성원에 이르러서는 비난의 정도가 희석되어 구성원 개개인의 사회적 평가에 영향을 미칠 정도에 이르지 아니한 경우에는 구성원 개개인에 대한 모욕이 성립되지 않는다고 봄이 원칙이다.
- ④ 어떤 글이 특히 모욕적인 표현을 포함하는 판단 또는 의견의 표현을 담고 있는 경우에도 그 시대의 건전한 사회통념에 비추어 그 표현이 사회상규에 위배되지 않는 행위로 볼 수 있는 때에는 형법 제20조에 의하여 예외적으로 위법성이 조각된다.

【문 7】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범인 스스로 도피하는 행위는 처벌되지 아니하므로 방어권의 남용으로 볼 수 있는 경우가 아닌 한 범인이 도피를 위하여 타인에게 도움을 요청하는 행위 역시 도피행위의 범주에 속하는 한 처벌되지 아니하며, 범인의 요청에 응하여 범인을 도운 타인의 행위가 범인도피죄에 해당한다고 하더라도 마찬가지이다.
- ② 형사변호인의 기본적인 임무는 피고인 또는 피의자를 보호하고 그의 이익을 대변하는 것이므로 변호인이 의뢰인의 요청에 따른 변론행위의 일환으로 변호인이 진범인 乙 등을 은폐하기 위하여 甲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허위자백을 유지하도록 하는 행위를 하였더라도 범인도피죄의 정범 또는 그 공범으로서의 책임을 지지 아니한다.
- ③ 참고인이 수사기관에서 범인에 관하여 조사를 받으면서 그가 알고 있는 사실을 묵비하거나 허위로 진술하였다고 하더라도 그것이 적극적으로 수사기관을 기만하여 착오에 빠지게 할 정도가 아닌 한 범인도피죄를 구성하지 아니한다.
- ④ 범인도피죄에서 ‘죄를 범한 자’는 범죄의 혐의를 받아 수사대상이 되어 있는 사람이면 그가 진범이 아닌 경우에도 이에 해당한다.

【문 8】 배임수증재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배임수재죄 및 배임증재죄에서 공여 또는 취득하는 재물 또는 재산상 이익은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 또는 사례여야 한다. 따라서 거래상대방의 대향적 행위의 존재를 필요로 하는 유형의 배임죄에서 그 거래상대방이 양수대금 등 그 해당 거래에 따른 계약상 의무를 이행하고 배임행위의 실행행위자가 이를 이행받은 것을 두고 부정한 청탁에 대한 대가로 수수하였다고 쉽게 단정하여서는 아니 된다.
- ② 타인의 업무를 처리하는 사람에게 공여한 금품에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과 그 외의 행위에 대한 사례로서의 성질이 불가분적으로 결합되어 있는 경우에는 그 전부가 불가분적으로 부정한 청탁의 대가로서의 성질을 갖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
- ③ 공동의 사기 범행으로 인하여 얻은 돈을 공범자끼리 수수한 행위가 공동정범들 사이의 그 범행에 의하여 취득한 돈이나 재산상 이익의 내부적인 분배행위에 지나지 않더라도 그 돈의 수수행위는 따로 배임수증재죄를 구성한다.
- ④ 학교법인의 이사장 또는 사립학교경영자가 학교법인 운영권을 양도하고 양수인으로부터 양수인 측을 학교법인의 임원으로 선임해 주는 대가로 양도대금을 받기로 하는 내용의 ‘청탁’을 받았다 하더라도 그 청탁의 내용이 당해 학교법인의 설립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기본재산을 매수하여 사용하려는 것으로서 학교법인의 존립에 중대한 위협을 초래할 것임이 명백하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청탁이 사회상규 또는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것이라고 할 수 없으므로 이를 배임수재죄의 구성요건인 ‘부정한 청탁’에 해당한다고 할 수 없다.

【문 9】 뇌물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뇌물죄에서 뇌물의 내용인 이익이라 함은 금전, 물품 기타의 재산적 이익뿐만 아니라 사람의 수요·욕망을 충족 시키기에 족한 일체의 유형·무형의 이익을 포함하므로 제공된 것이 성적 욕구의 충족인 경우도 이에 해당한다.
- ② 법령에 기한 임명권자에 의하여 임용되어 공무에 종사하여 온 사람이 나중에 그가 임용결격자이었음이 밝혀져 당초의 임용행위가 무효라고 하더라도 그가 그 직무에 관하여 뇌물을 수수한 때에는 수뢰죄로 처벌할 수 있다.
- ③ 공무원이었던 자가 재직 중에 청탁을 받고 직무상 부정행위를 한 후 뇌물의 수수 등을 할 당시 이미 공무원의 지위를 떠난 경우에는 형법 제129조 제1항의 일반수뢰죄로 처벌할 수 없다.
- ④ 도시개발법 제84조는 ‘조합의 임직원, 제20조에 따라 그 업무를 하는 감리원은 형법 제129조부터 제132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벌칙을 적용할 때 공무원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으나, 이는 도시개발조합의 임직원 등이 직무에 관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었을 경우 이를 뇌물죄로 처벌하는 규정에 불과하므로 그 뇌물을 약속, 공여 또는 공여의 의사를 표시한 자에 대하여는 뇌물공여죄가 성립하지 아니한다.

【문10】 직권남용죄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직권남용죄는 공무원이 그 일반적 직무권한에 속하는 사항에 관하여 직권의 행사에 가탁하여 실질적, 구체적으로 위법·부당한 행위를 한 경우에 성립하고, 그 일반적 직무권한은 반드시 법률상의 강제력을 수반하는 것임을 요하지 아니하며, 그것이 남용될 경우 직권행사의 상대방으로 하여금 법률상 의무 없는 일을 하게 하거나 정당한 권리행사를 방해하기에 충분한 것이면 된다.
- ② 직권남용죄에서 말하는 ‘의무’란 법률상 의무를 가리키고, 단순한 심리적 의무감 또는 도덕적 의무는 이에 해당하지 아니한다.
- ③ 교도소에서 점검업무를 담당하던 교도관이 점검신청에 대하여 구 형형법 제18조 제2항(진족 이외의 자와의 점검과 서신수발은 필요한 용무가 있을 때에 한한다) 소정의 ‘필요한 용무’가 있는 때에 해당하지 아니한다고 판단하여 그 점검신청을 거부하였다면, 직권남용에 대한 범의는 인정되나, 점검신청거부행위의 위법성에 대한 인식이 없었던 경우에 해당하므로 직권남용죄로 처벌되지 않는다.
- ④ 직권남용죄가 기수에 이르려면 의무 없는 일을 시키는 행위 또는 권리를 방해하는 행위가 있었다는 것만으로는 부족하고, 지금 당장에 피해자의 의무 없는 행위가 이룩된 것 또는 권리방해의 결과가 발생한 것을 필요로 한다고 해석하여야 법문에 충실한 해석이라 할 것이므로 공무원의 직권남용이 있다 하여도 현실적으로 권리행사의 저해가 없다면 본죄의 기수를 인정할 수 없다.

【문11】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사법경찰관이 실제로 피의자에게 진술거부권을 행사할 수 있음을 알려주고 이를 행사할 것인지 물어 보았다면, 그에 대한 답변이 자필로 기재되지 않았거나 피의자의 기명날인이나 서명이 없다는 이유만으로 피의자신문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 ② 자기에게 불리한 진술을 강요당하지 아니할 권리는 헌법상 보장된 것이므로, 피고인은 범죄사실에 대하여 거짓 진술을 할 수 있으나, 죄증이 뚜렷한데도 적극적으로 진실을 숨기거나 법원을 오도하려고 시도했다면 보장된 방어권 행사의 범위를 넘는 것이므로 양형에서 가중적 요소로 고려할 수 있다.
- ③ 사전에 진술거부권을 고지하지 않고 작성된 조서에 담긴 피의자의 진술은 그 진술에 임의성이 인정되더라도 증거능력이 없다.
- ④ 실제 공범이면서 참고인 자격으로 조사를 받은 경우, 그 때까지 그에 대한 범죄혐의가 인정되어 수사를 개시하지 않은 이상, 진술거부권 고지가 없었다는 이유만으로 그에 대한 진술조서의 증거능력을 부정할 수는 없다.

【문12】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이 위법한 공시송달 결정에 터 잡아 피고인에게 공소장 부분과 기일소환장을 송달한 후 불출석 상태에서 판결을 선고하였다면, 항소심은 적법한 소제탐지 등 절차를 거쳐 다시 공시송달 결정을 하고 피고인을 소환한 후 증거조사를 새로이 해야 하나, 공소장 부분을 다시 송달할 필요는 없다.
- ② 법원이 기록상 나타난 피고인의 주거·사무소·현재지와 전화번호를 통해 소재를 확인하려는 시도를 다 하였으나, 당시 피고인이 수감 중이어서 연락이 되지 않았다면, 공시송달 결정을 하였다고 하여 위법하다고 할 수는 없다.
- ③ 폭행죄로 약식명령이 발령되고 피고인이 정식재판을 청구한 사건 제1심에서 피고인에 대한 송달불능보고서가 2017. 2. 6. 접수되었는데, 같은 해 2. 20. 피고인에 대한 송달을 공시송달로 할 것을 명했다면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제23조 및 그 시행규칙 제19조에서 정한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로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피고인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는 경우’에 해당하지 않으므로 그 소송절차는 위법하다.
- ④ 제1심에서 피고인이 책임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판결이 선고되었고, 그 판결에 대하여 검사만 항소하고 항소심도 불출석 재판으로 진행된 후 제1심 판결이 파기되고 유죄판결이 확정된 경우, 피고인은 정해진 기간 내에 항소심 판결에 대해 재심을 청구하거나 상소권 회복을 받아 상고할지를 선택할 수 있다.

【문13】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제1심이 국민참여재판 대상사건임을 간과하여 피고인의 의사를 확인하지 않은 채 통상의 공판절차로 재판을 진행한 경우, 이는 치유할 수 없는 중대한 절차적 하자이므로 항소심은 제1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제1심 법원에 환송해야 한다.
- ② 피고인이 원하지 않더라도 법원이 적절하다고 인정할 경우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할 수 있다.
- ③ 피고인이 공소장 부분을 송달받은 날부터 7일 이내에 국민참여재판을 원한다는 의사확인서를 제출하지 않았더라도, 제1회 공판기일이 열리기 전까지는 국민참여재판 신청을 할 수 있다.
- ④ 피고인은 국민참여재판 배제결정에 대하여 즉시항고를 할 수 있고, 검사는 국민참여재판으로 진행하기로 하는 결정에 대하여 보통항고를 할 수 있다.

【문14】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강간죄로 기소된 피고인에 대하여 항소법원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하고 국선변호인 선정청구에 대한 결정을 하지 않은 사이에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했으나 그 때에는 이미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이 도과했다면, 사선변호인에게 따로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해야 한다.
- ②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피고인과 그 변호인에게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했는데, 그 후 피고인이 변호인을 선임했다면 항소이유서의 제출기간은 사선변호인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받은 날을 기준으로 계산해야 한다.
- ③ 피고인의 소재가 불명하여 적법한 공시송달절차를 거쳐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공시송달했다면, 그 후 피고인이 보정한 주소로 재차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했다더라도 항소이유서 제출기간은 최초 송달의 효력이 발생한 공시송달일을 기준으로 한다.
- ④ 항소법원이 국선변호인을 선정하고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한 후 변호인 없는 사건이 추가로 병합되었으면, 그 사건에 관하여 국선변호인에게 새로이 소송기록접수통지서를 송달해야 한다.

【문15】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지 않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상상적 경합관계에 있는 죄들 중 일부 죄의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고 하여 나머지 죄의 공소시효까지 완성되는 것은 아니다.
- ② 검사가 강도살인죄로 공소시효기간 내에 기소하였는데 법원이 공소장변경 없이 강도죄만 유죄로 인정할 경우, 강도죄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제기 당시 이미 공소시효가 완성되었다더라도 면소판결을 할 수는 없다.
- ③ 범죄 후 법률의 개정으로 법정형이 가벼워진 경우에는 형법 제1조 제2항에 의해 적용될 신법의 법정형을 기준으로 공소시효를 따져야 한다.
- ④ 공범 중 1인으로 기소된 사람이 범죄의 증거가 없다는 이유로 무죄의 확정판결을 받았다면, 그에 대한 공소제기로 다른 공범에 대한 공소시효의 진행이 정지되지 않는다.

【문16】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면허 없이 주취 상태에서 운전한 사실로 도로교통법위반(음주운전), 도로교통법위반(무면허운전)죄로 기소된 사건에서 한 죄는 무죄, 다른 죄는 유죄가 선고되고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유죄 부분은 상고심의 판단 범위에서 벗어난다.
- ② 주간에 주거침입 후 절도한 사실로 기소된 사건의 항소심에서 주거침입죄는 유죄, 절도죄는 무죄가 선고되었고 검사만 무죄 부분에 대하여 상고한 경우, 검사의 상고가 이유 있으면 피고인에게 1개의 형을 선고할 수 있도록 직권으로 유죄 부분까지 파기하여 환송해야 한다.
- ③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2항)로 기소되었으나 제1심이 사실적시 명예훼손죄(형법 제307조 제1항)의 유죄만 인정하면서 허위사실적시 명예훼손죄의 무죄이유를 기재하지 않았다면, 이러한 위법은 항소심의 직권조사사유에 해당하므로, 피고인만 유죄 부분에 대하여 항소하고 검사가 항소하지 않았더라도 제1심 판결 전부를 파기할 수 있다.
- ④ 법원이 필로폰 매매를 유죄로 인정하면서도 그 필로폰 가액을 추정하지 않은 경우, 검사는 추정을 하지 아니한 부분만 불복대상으로 상소할 수 있고, 이 경우 본안에 관한 판단 부분도 상소의 효력이 미쳐 함께 이심된다.

【문17】 공소장변경에 관한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일반적으로 범죄의 일시는 공소사실의 특징을 위한 요건이지 범죄사실의 기본적 요소는 아니므로, 공소장 기재 범죄의 일시와 법원이 인정하는 범죄의 일시가 그 간격이 길고 그로 인하여 범죄의 성부에 중대한 관계가 있어 피고인의 방어권 행사에 실질적인 불이익을 가져다 줄 우려가 있다는 등의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그 범죄 일시를 공소장 기재와 다소 달리 인정함에 있어 공소장변경의 절차를 요하지 아니한다.
- ② 포괄적일죄의 관계에 있는 상습범의 일부에 대한 기판력은 현실적으로 심판대상이 되지 않은 다른 부분에 까지도 미치므로 상습범의 일부가 기재된 공소장에 다른 부분을 추가하였다 하여 공소사실의 동일성을 해하는 것은 아니지만, 공소장변경은 원칙적으로 항소심에서는 할 수 없다.
- ③ 절취행위에 대하여 형법 제332조, 제329조, 제330조를 적용하여 형법상의 상습절도죄로 기소할 경우, 구성요건이 동일하다면 공소장변경 없이 형이 더 무거운 특정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5조의4 제1항, 형법 제329조, 제330조를 적용하여 처벌할 수 있다.
- ④ 공소장변경 절차 없이도 법원이 심리·판단할 수 있는 죄가 한 개가 아니라 여러 개인 경우에도, 법원으로서 그 중 어느 하나를 임의로 선택할 수 있으며 검사에게 공소사실 및 적용법조에 관한 석명을 구하여 공소장을 보완하게 할 필요 없이 심리·판단할 수 있다.

【문18】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구속기소된 사건(이하 ‘제1사건’) 재판이 진행 중 추가기소된 사건(이하 ‘제2사건’)이 병합되었고, 제2사건에 관하여 검사와 피고인의 모두진술까지 행해졌다면, 그 직후 제1사건 구속기간이 곧 만료될 경우 법정 외에서 별도의 청문절차 없이 제2사건 범죄사실에 관하여 적법하게 구속영장을 발부할 수 있다.
- ② 피고인에 대한 구속기간은 2개월이고, 공소제기 전의 체포·구속·구금기간은 위 기간에 산입된다.
- ③ 법원이 법률에 대하여 위헌법률심판을 제청한 때에는 위헌여부의 결정이 있을 때까지 당해 사건의 재판이 정지되고, 그 재판정지기간은 구속기간에 산입하지 않는다.
- ④ 대법원의 파기환송 판결에 의하여 사건을 환송받은 항소심은 환송 전 항소심이 구속기간을 갱신하고 남은 차수에 한하여만 갱신을 할 수 있다.

【문19】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관련 사건 제1심이 서울중앙지방법원과 수원지방법원 성남지원에 각각 계속되어 있을 때, 피고인은 위 각 사건을 1개 법원으로 하여금 병합심리하게 해달라는 신청을 대법원에 해야 한다.
- ② 사기죄로 기소되어 단독판사가 판결하고 같은 법원 항소부에서 항소심 계속 중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공소장이 변경된 경우, 고등법원으로 이송해야 한다.
- ③ 일반 국민이 군용물절도죄를 저질러 군사법원이 재판권을 가질 경우, 그와 경합범으로 기소된 허위공문서작성죄도 군사법원에 재판권이 있다.
- ④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사기)죄로 기소되었으나 검사가 사기죄로 공소장을 변경한 경우, 단독판사에게 재배당해야 한다.

【문20】 다음 설명 중 가장 옳은 것은?(다툼이 있는 경우 판례에 의함)

- ① 재심개시절차에서는 재심사유가 있는지 외에도 재심사유가 재심대상판결에 영향을 미칠 가능성이 있는가도 고려해야 한다.
- ② 재심의 청구는 취하할 수 있고, 나중에 동일한 이유로써 다시 재심을 청구하는 것도 가능하다.
- ③ 형사소송법은 유죄의 확정판결 또는 유죄 판결에 대한 항소 또는 상고의 기각판결에 대하여만 재심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으므로, 항소심에서 파기된 제1심 판결에 대하여는 재심을 청구할 수 없다.
- ④ 재심개시결정이 확정되기 전에 재심청구인이 사망하더라도 재심청구절차는 종료하지 않는다.